

화장실문화품질인증 (TCQ마크)제도



I. 화장실 문화 품질 우수 기업 인증 제도

(사)한국화장실문화협회는 화장실문화의 선두주자로서 국민의식고취 및 문화개선사업과 세계화장실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적 관계속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드높여 오던 바 화장실문화품질인증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화장실문화품질인증(TCQ마크)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. 화장실관련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(사)한국화장실문화

협회의 기본목적인 쾌적한 화장실 환경조성 및 범국민적인 깨끗한 화장실 이용문화 창출에 기여하는 화장실 문화 품질 우수기업을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상기업의 전반적 화장실 문화 품질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그 성과가 탁월한 기업에게 인증하여 널리 공표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범국민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.

추진사업

- 공중화장실의 기획/설계/시공/사후관리 전반에 관여하고 있는 업체의 인증
- 현 화장실 관련사업을 하나의 산업군으로 개편하고 공중화장실의 관리 주체인 공공 기관, 지자체 및 주요기관 등이 요구하고 있는 표준화된 시공
- 관리시스템 제공에 필요한 업계 공동의 사업으로 해당 발주처(관공서)에 추천하는 제도 정착
- 업체의 산업일반의 제품 표준화 수준과 품질관리 등을 중심으로 한 개별기업에 대한 인증 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개별용품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제반연구 및 업계와의 표준화 논의를 통한 품목별 인증 사업으로 확대 발전
- 화장실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전 국민적인 문화 운동 으로 확대
- 전국 단위 지방자치단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인증의 경쟁력 향상

II. 인증 대상 및 방법

1. 신청 대상 기업

- 시설·관리업 : 화장실관련 시설 및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
- 용품 관련업 : 화장실관련 용품을 생산 및 유통하는 기업
- 기타

2. 신청 대상 기관/업소

- 지방자치단체 : 공공행정기관
- 교육·문화단체 : 대학교/대학, 초·중·고등학교, 유치원, 학원(운전 학원 포함)
- 숙박서비스업 : 호텔, 콘도미니엄(종합휴양업 포함)
- 외식서비스업 : 식당(한식/일식/중식), 패스트푸드점 등
- 운송서비스업 : 항공, 철도, 선박, 휴게소, 터미널
- 보건/복지서비스업 : 병원(종합, 일반, 개인, 한방병원, 의원), 복지 및 장애 관련시설
- 일반서비스업 : 테마공원(놀이공원), 종합용역업(빌딩관리업), 주유소, 예식장, 스포츠센터, 백화점, 대형 유통 센터 등
- 기타



글 | 김연식
한국화장실 문화협회 연구실장



Toilet Culture Quality 의 약자로서 한국화장실문화협회의 화장실문화품질인증위원회에서 인증하는 화장실문화품질 마크입니다.

3. 인증절차

- ① 신청서 접수 → (사)한국화장실문화협회의
(인증심사비용문의는 협의회로 연락 - 우편·팩스·전화·방문)
Tel) 031-226-7001 Fax) 031-226-7045
- ② 서류심사 → 인증위원회에서 실시 (적.부판정으로 활용하지않음)
- ③ 인증심사 실시통보 → 인증심사비용납부 : 신청업체부담(부가세 포함)
- ④ 현지공개평가 → 심사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함
· 평가 단 : 인증위원회 (산·학·연 전문가로 구성)
· 공개평가 : 기업단위 1일
- ⑤ 인증통보 및 인증서교부
· 인증위원회 최종심의 결정
· 인증유효기간 1년
- ⑥ 사후관리 → 필요시 실시(feedback)

4. 인증심사비용 : 신청업체 부담(부가세 포함)

5. 인증심사 평가기준 : 공통평가 기준을 적용하되, 필요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적용

6. 평가단 구성 : 인증위원회 (산·학·연 전문가로 구성)

7. 평가방법

- 서류심사 : 집행기관에서 실시
- 공개평가 - 공개평가를 토대로 하여 화장실품질 인증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결정
(총1000점에서 800점이상일 때 인증한다)

◆기업평가 - 공개평가(1000점)

8. 인증서(패)수여

- (사)한국화장실문화협회의 화장실문화품질인증위원회에서 수여

9. 인증 유효기간 및 사후관리

-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1년이며, 기간만료 시 재평가를 받아 기간연장 가능
- 사후관리 : 필요시 실시

10. 인증마크의구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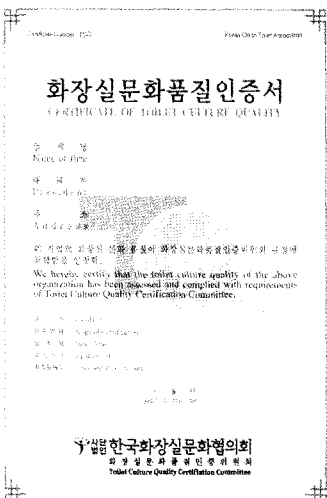
- TCQ-7001(기업)

11. 인증마크(패)활용

- 업체의 사업장게시, 제품, 용기, 포장에 표시
- 광고시 인증내용 홍보(각종 홍보물 대상)

12. 인증업체에 대한 특전 및 지원

- 美小空에 선정업체 홍보, 이를 관련기관(단체) 및 업계에 배포하여 홍보 및 판로지원
- 공중화장실의 개.보수사업 등 각종 지자체 발주사업에 대해 지자체나 발주처의 업체 추천요청이 있을 시 추천함.
- 인터넷 홍보 및 기타



▶ 위와 같은 인증제도를 모태로 하여 화장실문화우수기관(업소)의 신청을 받고있습니다.
더욱 자세한 사항은 협의회사무국 (031-226-7001)으로 문의 바랍니다. [담당 - 김연식 실장]